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27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남근 · 민병덕 · 김문수
이훈기 · 박선원 · 이주희
박정현 · 이강일 · 남인순
김우영 · 김 윤 · 김현정
진성준 · 최혁진 · 염태영
백승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